

안경업소 양도·양수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즉시
------	-----	----------

안경업소	명칭	개설등록번호
	소재지	

양도인	성명	생년월일
	면허번호	
	주소	
	연락처(전화) (전자우편)	

양수인	성명	생년월일
	면허번호	
	주소	
	연락처(전화) (전자우편)	
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양수인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.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·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(양수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: 조례로 정함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신고서 작성	➔	접수	➔	서류 검토	➔	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	➔	개설등록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